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첨 토 보 고 서

1. 규칙안 개요

- 제안자 : 박춘희 의원
- 제안일자 : 2025. 5. 21.
- 회부일자 : 2025. 6. 9.
- 상정일자 : 2024. 6. 10.

2.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군의회 의사 공개 관련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회의록 공개 기한 명확화(안 제54조제1항)
- 임시회의록 공개 규정 신설(안 제54조제7항)
- 실시간 중계 근거 및 중계 대상 규정(안 제54조의2)
- 영상회의록 공개 대상 및 공개 기한 등 규정(안 제54조의3)
- 방청 제한 고지 규정(안 제90조제5항 신설)
- 의회 방청 준수사항 조정(안 제91조제1항의 제2호와 제5호 삭제)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75조 및 제84조에서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제83조에서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에서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법 및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나. 입법의 취지

- 군의회 의사 공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회의록을 신속히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방청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친화 및 탈권위적 의회 방청환경을 마련하여 군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54조(배부 및 공개)에서 임시회 및 정례회 종료일부터 30일내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기한을 명확히 하였으며, 임시 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신속한 공개를 도모함.
- 안 제54조의2(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회의 중계)에서 회의 중계 대상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실시간 중계의 근거를 마련함.

- 안 제54조의3(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에서 영상회의록의 공개기한 및 공개대상을 규정함.
- 안 제90조(출입 및 방청제한)에서 방청 제한 고지 규정을 마련하여 방청 제한 시 제한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규정함.
- 안 제91조(준수사항)에서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및 신문 등 서적류를 읽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친화 및 탈권위적 의회 방청환경을 조성함.
- 안 제92조(중계방송 등)에서 내용의 명확화를 위하여 일부 단어를 수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

5. 종합검토의견

- 군의회 의사에 관한 회의록 및 방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고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불임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75조(회의의 공개)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 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회의록) ① ~ ③ (생략)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지방의회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제84조제3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전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

④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불임 참고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도개선 권고(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불임1]과 같이 권고하오니, 조치기한 내에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제도개선의 원활한 이행관리를 위해 [불임2]의 '제도개선 추진계획서'를 2024. 9. 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권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조치결과는 [불임3]의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에 작성하여 조치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 부서가 아닐 경우 해당 부서로 재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1. 제도개선 의결서 1부.

2. 제도개선 추진계획서(양식) 1부.

3.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양식) 1부. 끝.

수신자 광역의회, 기초의회(시군의회), 기초의회(구의회)



주무관 김민주 경제제도개선 과장 최상근 권익개선정책 전길 2024. 8. 5.
국장 민성실

협조자

시청 경제제도개선과-1979 (2024. 8. 5.) 접수 의회사무과-3084 (2024. 8. 5.)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어진동) / www.acrc.go.kr

전화번호 044-200-7234 팩스번호 044-200-7922 / bullock@korea.kr / 대국민 공개

공공기관 갑질 행정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6.3.-7.31.)